

과천도시공사 복리후생규정

제정 2019.12.31. 규정 제1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건강과 복리후생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격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시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의료기관을 지정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복 리 후 생

제6조(후생시설의 운영) 공사는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직장새마을금고와 구내휴게소, 구내식당 및 기타 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복리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2. 직급보조비
3. 명절휴가비

② 복리후생비 지급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8조(피복지급) 공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임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학자금 보조) ① 공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 임직원의 자녀 중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학자금을 보조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보조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10조(직장 체육진흥)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체육행사등) ① 임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시 취미클럽을 육성 발전토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재 해 보 상

제12조(재해보상) 임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손해보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의 경감)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